

# 2021년도 제3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3. 4.(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2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48건(안전번호 제2021-22039호~22624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22039호~22053호(순번 1번~15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만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만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결함.  
안전번호 22054호(순번 16번)와 안전번호 22056호~22064호(순번 18번~26번)는 블로그에서 해외 영상물(방송)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안전번호 22055호(순번 17번, 1건)는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어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나, 복제·전송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경고 가결함.  
안전번호 22065호~22624호(순번 27번~586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808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1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2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 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신창환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건상정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9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84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586번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15번은 실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를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 등을 각각 50포인트에서 140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19개의 게시

물임.

(순번 1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12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총 1권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15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14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총 1권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15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순번 1번의 만화 게시물 하단에 워터마크는 누가 붙인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자가 직접 붙인 것임.
- A 위원: 순번 15번의 만화 게시물 하단에도 워터마크가 붙어있는데, 저작인격권 침해는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자신이 복제·배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저작자의 성명을 대체하거나 동일성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됨.
- D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임.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별도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음. 일단,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15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6번~26번은 익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및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방송) ‘●●●’, ‘▲▲▲’, ‘■ ■ ■’ 등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총 21개의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17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의 전체인 24분 10초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보호원 모니터링 요원이 해당 게시물을 채증한 이후에 게시자가 삭제함.

(순번 20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의 전체인 24분 10초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보호원 모니터링 요원이 해당 게시물을 채증한 이후 비공개로 전환됨.

(순번 26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 총 6화의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순번 20번 내지 24번의 경우 2021. 3. 2. 현재 비공개 글로 전환되어 있으나, 언제든지 공개로 전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거나 이웃공개, 서로이웃공개 등의 형태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공개 게시물과 동일하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한편, 순번 17번(1건)의 게시물은 2021. 3. 2. 현재 이용자에 의해 삭제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나, 복제·전송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함이 타당함(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6번~26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순번 20번 게시물을 보면, 보호원에 의해 2021. 2. 23. 저작권 침해로 비공개 조치되었다는 공지글이 있음. 또한, 해당 블로그 전체가 폐쇄될지도 모른다는 블로그 운영자의 우려감이 표현되어 있음. 불법복제물 공유자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시정권고 활동을 통해 보호원이 이루어낸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A 위원: 순번 26번 게시물에 보면, 티스토리 블로그의 방송물 플레이어 화면에 '네이버' 표시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이를 임베디드 링크해서 티스토리 블로그로 가져온 것으로 보임.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6번~26번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27번~58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만화,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봄이 온다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16번은 웹하드에서 음악 '봄이 온다면'을 20포인트에 제공 중임. 가수 안예은이 부르고, (주)블렌딩이 2017. 2. 6 발매한 국내 발라드 곡으로, 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의 OST로 쓰임.  
 (방송 '곰 곰 곰 베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59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곰 곰 곰 베어'를 20포인트에 제공 중임. 3화 전체 분량인 24분을 제공하고 있음. 일본 AT-X에서 2020. 10. 7.에 공개한 TV 방송용 애니메이션으로, 1,500원에 정식구매가 가능함.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86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를 88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1시간 51분 34초를 제공하고 있음.  
 2021. 1. 28. 개봉한 국내 영화로 2021. 3. 4. 현재 극장 개봉 중임. 7,000원에 정식구매가 가능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27번~586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27번~586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7번~58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제2021-22039호~22624호(순번 1번~58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3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3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3. 4.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